

부산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1나52245 판결 [계약금등 반환청구]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1나5224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가합1432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김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모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친구 담당변호사 박소희

변론 종결2021. 9. 9.

판결 선고2021. 9. 30.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가합1432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9,476,626원과 그 중 226,592,500원에 대하여는 2020. 5. 12.부터 2020.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668,414,500원에 대하여는 2020. 9. 7.부터 2020.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10.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재형

판사이재욱

판사박선영